



감사원

주의요구(약식)

제 목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

소관기관 법무부

조치기관 법무부

내용

법무부(대구소년원)는 2023. 1. 31. 주식회사 ㈔(대표자 A)와 “① 구축 리모델링 정보통신 감리용역”(계약금액 2,000,000원, 이하 “감리용역 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고, 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입찰 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위 관서(대구소년원)는 2023. 1. 31.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, 당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¹⁾ 중(2023. 1. 11.~6. 10.)이던 주식회사 ㈔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.

1) 충주시는 주식회사 ㈔에 대해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행 중 현장 이탈 등의 사유로 5개월(2023. 1. 11.~2023. 6. 10.)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

조치할 사항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제27조 등을 위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

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